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16다206369 수로철거등  
원고, 상고인 원고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길  
담당변호사 장현길 외 3인  
피고, 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 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  
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4나13479 판결  
판 결 선 고 2016. 6. 23.

주 문

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.

가. 소외 1은 1984. 11. 30. 예당농지조합(2000. 1. 1. 농어촌진흥공사 등과 함께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이후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와 같이 피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. 이하 '피고'라 한다)에게 그 소유의 당진시 (주소 1 생략) 중 일부를 삽교천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공사용지(세류5지)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80%에 해당하는 436,000원을 지급받았다. 이후 위 토지는 1986. 2. 6.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.

나. 소외 2는 1978. 4. 24. 당진시 (주소 2 생략)에 관하여 1978. 4. 17.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, 위 토지는 1986. 2. 6.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, 3토지로 분할되었다. 피고는 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85년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2, 3토지 중 일부의 사용 대가로 86,400원을 지급하였다

다. 소외 1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1986. 3. 7. 이 사건 제1토지 및 원심 판시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1985. 3. 25.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원고는 1986. 3. 29.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, 4토지를 매수하여 1986. 4. 4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, 1986. 3. 15.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, 3토지를 매수하여 1986. 4. 30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피고는 1981. 4. 29.경 삽교천 농업종합개발사업 토목공사에 착공하여 1990. 12.경까지 용수지선을 설치하고 경지정리 공사를 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구거를, 이 사건 제2, 3, 4토지 지중에 암거를 각 설치하여 현재까지 세류5호 용수지선 일부로 관리하며 삽교호에서 인근 논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로 활용하고 있다.

2.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

가. 원심은, 이 사건 제1토지는 소외 1이 피고에게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공사용지(제류5지)로 매도함으로써 그 지상에 구거 설치 및 그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사용 등을 승낙하였고, 이 사건 제2, 3토지는 소외 2가 피고에게 그 지중에 암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토지 사용 등에 관한 승낙을 받았는데,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(1994. 12. 22.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3조에 따라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권리의무 및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, 이 사건 제1, 2, 3토지에 관한 피고의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그 사용이익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, 원고의 이 사건 제1, 2, 3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.

나.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.

1)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농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·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(제154조 제1항), 그에 관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(제157조),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수용·사용 등 이외의 사유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도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(제156조 본문). 또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준용하는 토지수용법(2002. 2. 4.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)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후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승계한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(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4조 제2항,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).

한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'농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

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'(제173조)고 규정하고 있다. 그러나 이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시행 도중에 그 지역 내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서, 거기에서 말하는 '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'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,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공법상의 권리의무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다43607 판결 등 참조).

그러므로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, 그러한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·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.

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서는,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원고의 전 소유자들 중 소외 1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, 소외 2가 이 사건 제2, 3토지에 관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는 있지만, 그로써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마쳐졌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, 피고가 거기에 구거 및 암거를 설치하여 해당 부분의 토지를 점유·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

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바도 없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, 거기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의 해석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

이유 있다.

### 3.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

#### 가.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

원심은,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5년경 이 사건 제2, 3토지 소유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2, 3토지 중 일부의 사용 대가로 86,4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 따라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, 이 사건 제2, 3토지에 설치된 암거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.

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, 원심이 작성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공문서도 아니며 허위로서 조작 가능성마저 있는 을 제20호증(용지매수보상비 준공 정산서)의 기재에 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.

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, 상고심도 이에 기속된다.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. 결국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
#### 나.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

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, 이 사건 제4토지에 설치된 암거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.

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.

#### 4. 결론

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,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,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김    신

주    심   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박병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박보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권순일